

## 21. 지적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124호 1999. 2. 26

### 개정이유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비영리법인의 수를 1개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등 행정 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지적제도의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경계복원측량신청시에 인접 토지소유자의 측량참여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 등을 지적측정 대행법인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과 동 대행법인이 측량신청인과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등을 송부하도록 한 규정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측량신청인 등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이를 각각 삭제함(현행 제45조의2 삭제).
- 나.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측량업무에의 종사를 금지 또는 제한한 규정은 지적기술자 등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함(현행 제64조 삭제).
- 다. 지적측량대행법인의 설립요건중 시·도의 지사 설치요건에 관한 규정과 대행법인의 수를 1개로 제한한 규정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령 제67조).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해면이 된 토지의 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말소의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제2호 단서중 “협장하여”를 “좁고 길어”로,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4.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되, 전체 시·

군·구의 3분의 2이상에 출장소를 두고 있을 것

제71조 및 제77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소관청은”으로 한다.

① 소관청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신청의무해태 이유, 업무집행의 거부 또는 방해 이유 등을 조사·확인한 후 그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사실 또는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과 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제2항제5호, 제12조의2제6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9조제2항·제4항제4호, 제38조제2항 단서, 제45조제2항 본문, 제53조제2항, 제74조 본문, 제75조 본문, 제82조 및 제83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제6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 제70조제1항 본문·제2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8조제3항·제5항, 제79조의3 후단 및 제8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내무부장

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제2항,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제66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79조의3 후단, 제80조제1항 · 제2항, 제81조제1항 · 제2항, 제81조의2제3항 및 제81조의3제1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 · 도지사”로 한다.

제78조제2항 · 제5항 및 제79조의3중 “내무

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199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중 내무부장관 명  
칭변경외의 사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